

김포시 통리·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의안 번호	제2958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년월일 2022. 01. 11.
제출자 김포시장

1. 심사경과

- 본 안건은 2022년 01월 11일 김포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임.

2. 제안이유

- 공동주택 명칭 변경 및 지역여건에 따른 반 구획 조정사항 등을 반영하여 주민 편의 증진과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- 양촌읍 공동주택 등 명칭 변경 : 양곡11리, 양곡15리, 흥신1리, 흥신2리
- 운양동 행정통 반 조정 및 신설 : 운양24통, 운양52통

4. 검토의견

- 본 안건은 양촌읍 공동주택단지 명칭 변경과 운양동 대규모 오피스텔 입주에 따른 반 구획 조정 및 미지정 구역에 대한 관할 통을 신설하여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일선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안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검토됨.